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

목 차

I 중점심사(테마심사) 제도

1. 중점심사 개요
2. 중점심사 절차
3. 중점심사 결과

II 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

III 향후 계획

I 중점심사(테마심사) 제도

1. 중점심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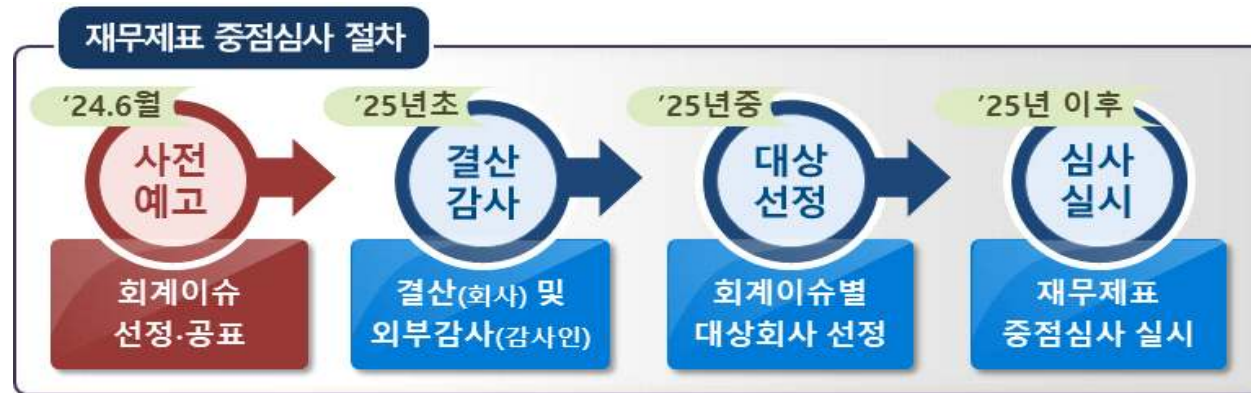
- 중점심사(테마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다음 연도에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를 미리 선정하여 알리고 추후 이에 한정하여 신속 점검함으로써
 - 회사 및 감사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여,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감독정책
 - 우리원은 지난 '13년부터 '24년까지 총 48개 회계이슈를 선정하여 발표
 - 외감규정상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된 '19년부터 회계이슈 사전예고 시점을 12월에서 6월로 앞당겼으며
 - 점검 결과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착수 후 120일 이내에 지도(주의·경고) 및 수정권고·자진수정으로 신속 종결

[참고] 회계이슈 선정 현황(2013~2024년)

심사대상 재무제표	중점점검 회계이슈	심사대상 재무제표	중점점검 회계이슈
2013년	① 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측정 ②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평가 ③ 신종증권 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 ④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2019년	㉕ 新리스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 ㉖ 충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 ㉗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등 관련 수익인식 ㉘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14년	⑤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⑥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의 적정성 ⑦ 영업이익·이자비용 산정의 적정성 ⑧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2020년	㉙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㉚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영업권, 개발비 제외) ㉛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적정성
2015년	⑨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⑩ 원자재 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⑪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 ⑫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21년	㉝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의 적정성 ㉞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의 적정성 ㉟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의 적정성 ㊱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의 적정성
2016년	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 ⑭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⑮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⑯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2022년	㊲ 수익 인식 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㊴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㊵ 사업결합
2017년	⑰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 ⑱ 국외매출(수주산업 제외)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⑲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 ⑳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2023년	㊶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㊷ 전환사채 콜옵션 ㊸ 장기공사수익 ㊹ 우발부채 공시
2018년	㉑ 新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㉒ 新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㉓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 ㉔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2024년	㉕ 수익인식 회계처리 ㉖ 비시장성 자산평가 ㉗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㉘ 가상자산 회계처리

2. 중점심사 절차

- 심사대상 회계이슈(테마)를 사전 예고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외부의견수렴 절차 및 법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절차적 투명성 확보



1 회계이슈 · 업종 선정 : 매년 4~6월

- 외부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회계이슈·업종을 선정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① **(이슈 신규 발굴)** 금감원·한공회 실무진 의견 및 주요 지적사례, 해외감독기구* 사례, 언론보도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의성 및 오류 가능성이 높은 회계이슈 발굴

*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및 영국재무보고위원회(FRC), 매년 4분기 다음 사업연도 중점 점검 회계이슈 발표

② (설문조사) 외부전문가(기업, 학계, 회계법인, 신평사, 금융회사 등)와 금감원 실무진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4개 회계이슈 및 연관성이 높은 업종 선정안을 마련

③ (회계정보간담회)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업종 선정안을 회계정보간담회* 위원들에게 배포하여 의견수렴

* 회계의혹 모니터링 및 효율적 테마심사를 위한 소통 채널로서 신평사·경제연구소·증권사·은행·한공회·회계법인 소속 외부전문가 등 약 10명으로 구성

➔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심사대상 회계이슈·업종 최종 확정

2 | 사전 예고 : 매년 6월

□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업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외감 규정 §24①]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안내문 발송 및 설명회 등 개최

○ 각 회계이슈별 선정 배경, 대상 업종, 선정 기준, 유의사항 및 회계오류 예시 등을 안내

3 | 테마심사 대상회사 선정* : 다음 해(상시)

*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조기 선정하거나 이슈별로 시기를 차등화하여 선정 가능

- ☐ 다음 해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회계이슈별 심사대상 업종 및 재무제표 영향 등을 반영하여 모집단을 설정한 후
 -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추정하는 세부기준을 정한 뒤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을 선정
 - 대상회사 수는 매년 1분기에 증선위에 보고하는 「회계심사·감리 실시 및 선정 계획」에 따라 결정하며,
 - 대상회사를 선정한 경우 지체 없이 증선위 위원장에게 보고[외감규정 §40①·②]

4 | 테마심사 실시

- ☐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이슈에 한정하여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매분기 종료 후 증선위 위원장에게 보고[외감규정 §40③]

3. 중점심사 결과

- '14년부터 '24.11월까지 사전 예고한 44개 이슈와 관련하여 총 349사에 대한 중점 심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발견된 84사(24.1%)에 대해 적의 조치
 - 84사중 32사(38.1%)에 대해서는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를 부과하였음
 - '18년 제약·바이오업종 개발비 일제 점검 및 '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이후 중점심사 지적률이 감소하는 등 단순 경미한 회계오류 감소 효과 ↑
- ⇒ 향후 중점심사 대상 회사를 확대하여 상장사 심사·감리주기를 단축할 계획

‘24.11월 현재 중점심사 결과
(심사대상 재무제표 기준)

(단위 : 사, %)

분류 코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A. 선정	20	20	20	50	30	20	39	40	50	50	70	409
B. 조치 (지적률)	4 (20.0)	4 (20.0)	12 (60.0)	17 (34.0)	18 (60.0)	6 (30.0)	7 (17.9)	3 (7.5)	10 (20.0)	3 (6.0)	- (-)	84 (24.1)
C. 무혐의	16	16	8	33	12	14	32	37	39	43	15	265
D. 진행중	-	-	-	-	-	-	-	-	1	2	25	28

II 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 점검 회계이슈]

수익인식 회계처리의 적정성

5단계 수익인식

· 고객과의 계약조건 관련 사실 및 상황 등을 종합적 고려



관련 주식 공시

· 수익의 구분, 계약잔액, 수행의무 등

※ (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 인식

· 취득시 분류 및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 평가

· 평가기법의 일관된 적용, 합리적 가정 및 투입변수 등

관련 주식공시

·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 측정 관련 평가기법, 투입변수 등

※ (업종): 전 업종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의 적정성

5단계 수익인식

· 거래의 객관적 증빙 및 실질 유의

관련 주식 공시

· 해당 특수관계의 성격
· 거래금액 및 약정을 포함한 채권 채무 잔액
· 채권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당기 중 대손상각비 등

※ (업종): 전 업종

가상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가상자산 발행기업

· 자의적으로 수익 및 자산 과대계상 금지, 유보토큰 주식공시

가상자산 보유기업

· 취득한 가상자산의 분류 및 최초(후속) 측정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경제적 통제여부 고려하여 자산(부채)계상

※ (업종): 전 업종

- 회사 및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024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 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 ※ 실제 심사대상 선정시 경기상황 등을 반영하여 대상업종 변동 가능

1 수익인식 회계처리

- **(선정배경)** 플랫폼 산업의 발전 등으로 거래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익기준(K-IFRS 제1115호)에 근거하여 계약을 식별하고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 등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총액·순액 판단 등)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
- **(대상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및 정보서비스업

심사대상 업종

분류 코드*	해당 업종
C00000	제조업(10~34)
G00000	도매 및 소매업(45~47)
J00000	정보서비스업(63)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한 대분류(중분류, 소분류) 코드

- **(선정기준)**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1 수익인식 회계처리_계속

- **(유의사항)** 수익기준(K-IFRS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① 아래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



② 범주별(계약유형 및 존속기간 등)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인식 판단 근거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

1

수익인식 회계처리_계속

회계위반 예시

- ❶ D사는 여러 공급자로부터 다양한 상품을 매입하여 온라인 플랫폼(모바일 앱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급자와는 상품 매입 단가 협상과 연계하여 해당 공급자에게만 제공하는 '광고 및 운송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동 용역 계약(매출)과 상품 매입 계약(매출원가)을 별도* 계약으로 판단하여 용역 매출을 상품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 매출로 계상하여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 재화 및 용역의 상호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아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없음

- ❷ E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유상사급 거래가 존재함. 즉, 회사는 하도급업체에 원재료를 공급(매출)하고, 하도급업체에서 가공된 반제품을 재구매(매출원가)하여 추가 가공 후 완성된 부품을 판매하고 있음.

원재료는 회사가 부품생산을 의뢰하면서 공급한 것으로, 가공업체는 실질적으로 원재료(자산)를 통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해당 유상사급 거래의 매출 및 매입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과대계상

* 하도급업체는 회사의 승낙 없이 원재료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단가는 적정 이윤이 보장되어 보유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지 않음

㉓ F사는 태양광발전소 설비업을 영위중으로 설비의 납품 및 설치 계약을 각각 구분하여 체결하고 설비의 납품은 x1년, 설치용역은 x2년에 각각 완료하였음.

다만, 계약서상 설비(제품)는 설치용역을 제공한 이후 검수가 완료된 시점에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어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납품과 설치용역을 구분할 수 없음에도(단일의 수행의무에 해당) 회사는 납품 완료시점(x1년)에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2 비시장성 자산평가

- **(선정배경)**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비상장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 및 손상여부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위반 가능성이 증가
 - 관련 기준서(K-IFRS 제1113호, 제1036호 등)에 근거하여 보유자산의 공정가치 및 회수 가능액 등을 적정하게 산정할 필요
- **(대상업종)** 全 업종
- **(선정기준)**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자산양수, 주식인수 등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의 비중 및 관련 주석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회사 선정
- **(유의사항)** 평가에 사용된 평가기법, 투입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 등에 유의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 ① **(비시장성 자산 인식)** : 취득시 금융자산 분류의 적정성, 관련 약정 등 검토를 통한 내재파생상품 존재 여부, 사업결합의 경우 식별가능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영업권의 인식요건 등에 유의

2 비시장성 자산평가_계속

② **(평가방법 점검)** : 거래 상황에 적합하며, 관측할 수 있는 투입 변수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적용

- 공정가치 측정시에는 사용되는 가정의 합리성 및 관련 투입변수가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신뢰할 만한 수준인지 여부 등 유의*

* 할인율, 목표 자본구조, 시장규모, 매출 성장률, 영구성장률, 임금상승률 등

③ **(주식 공시사항 점검)** : 정보이용자가 공정가치 측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주식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재

2 비시장성 자산평가_계속

회계위반 예시

- ❶ G사는 사업부의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시, 과거 실적하락의 원인과 외부증거(경쟁업체 실적 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미래 매출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반영하여 미래 매출액을 과다하게 추정함에 따라 영업권을 과대계상
 - ❷ H사는 종속회사의 할부판매중단 등 영업에 유의적인 상황 변화가 예상됨에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등의 손상검사를 소홀히* 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과 영업권 등을 과대계상
- * 과거 추정한 현금흐름과 실제 현금흐름의 차이 및 가정의 합리성 평가 미실시, 할부중단 효과 미반영 등
- ❸ I사는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취득 당시 원가로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소계상

3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 (선정배경)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손익을 왜곡시킨 후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내역을 주석으로 상세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최근 논의중인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의 충분한 공시*는 기업가치(주주가치)를 판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자 수익 인식 및 주석 공시에 유의할 필요

* 내부거래를 통해 상장사의 이익을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 개인회사로 이전하는 등의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공시 필요

□ (대상업종) 全 업종

□ (선정기준) 특수관계자 수익 비중 및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 (유의사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 기재

* 거래금액, 채권잔액(대손충당금 설정액 및 당기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포함) 등

3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_계속

회계위반 예시

- ❶ J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는 해외에 비영리법인(K사)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음. 이후 J사는 직접 개발한 코인 시스템을 K사에 공급하고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거래로 매출을 인식하였음에도, 비정상적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K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및 거래 내역을 주석에 미기재
- ❷ L사는 종속회사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종속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투자자와 체결함에 따라, 해당 약정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종속회사를 위한 사실상의 보증에 해당함에도 이를 주석에 미기재
- ❸ M사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동 대여금을 특수관계자(N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다른 특수관계자(O사)에 대한 채무와 부당 상계함으로써 자산·부채를 과소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허위로 기재

4 가상자산 회계처리

□ (선정배경)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발전으로 그 매개체인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회계에 미치는 영향 증대

- 지난해 말 금융위·금감원은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의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 공개를 위해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발표('23.12.20.)

* '23.7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

- 기업이 개발·발행·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

※ 참고로, 감독지침은 현재의 회계처리기준(IFRS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유권해석이며 각 기준서마다 분산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하나로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은 아님

□ (대상업종) 전 업종

□ (선정기준) 무형자산, 관련 수익 증감 및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4 가상자산 회계처리_계속

- **(유의사항)**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가상자산의 판매와 관련하여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 등)에 따라 발행기업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시점(또는 기간)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

※ 발행기업이 발행 후 내부유보(Reserved)한 토큰은 자산계상 금지(주석공시)

-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의 취득목적 및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 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적정하게 분류하고, 최초 및 후속 측정에 유의할 필요
-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거래소에 있는 경우 거래소의 자산·부채로 인식하여야 함

※ 또한, 가상자산 발행기업, 가상자산 보유기업 및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모두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및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등에서 주석공시하도록 요구한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23.12.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참고)

4 가상자산 회계처리_계속

회계위반 예시

- ① A사는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추후 플랫폼에서 토큰 결제시 재화·용역을 제공(수행 의무*) 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보다 앞선 토큰 이전 시점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

* 백서, 판매 약정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백서 등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이전할 것이라고 정당하게 기대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

수행의무 별 수익인식 시기 예시

수행 의무	수익인식 시기
토큰 이전 (추가 의무 없음)	토큰 이전 시점
토큰이 사용되는 플랫폼 구현을 약속	플랫폼 활성화 시점
플랫폼에서 토큰 결제시 재화·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속	재화·용역 제공시

- ② B사는 가상자산 발행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보관중인 가상자산(유보(Reserved) 토큰)을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인식*

* 발행 후 내부유보한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향후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유통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 토큰의 수량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

❸ C사(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거래소의 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 경제적 자원의 통제는 통상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며, ① 사업자와 고객 간 사적계약, ② 가상자산법, 특금법 등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률 및 규정, ③ 사업자의 고객 위탁 토큰에 대한 관리·보관수준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통제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III 향후 계획

-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2024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
- 금융감독원은 2024년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